

의안 번호	2610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	--

1. 검토경과

- 제 출 일 자 : 2026. 8. 21.(금)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8. 21.(금)
- 위원회 심사일자 : 2026. 9. 7.(월)

2. 제안이유

-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의 민간 위탁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옥외광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민간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6조)
- 별표 및 별지 서식 관련 조문 변경

4. 근거법규

-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가로등 현수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에 관한 사항, 조문 이동에 따른 별표 및 서식 정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으며, 지정게시대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 거 법 규】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구청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의 가로는 10미터 이내, 윗부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해야 하며, 색깔은 무채색·저명도·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3. 지정게시대는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5.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 해야 한다.
 6.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군수는 선정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제12조의2(가로등 현수기의 표시방법) 영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 70센티미터 이하, 세로 2미터 이하일 것
2.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하로 밀착시켜 표시할 것